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1439
----------	-------

발의연월일 : 2026. 9. 17.

발 의 자 : 김도읍 · 서천호 · 조배숙
이헌승 · 구자근 · 박성훈
김은혜 · 김희정 · 백종현
강대식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국유재산의 관리·개발, 부실채권의 인수·정리 및 기업구조조정 지원 등 국민의 재산권과 금융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적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특히 공공개발사업과 자산의 인수·처분 과정에서 부동산의 개발·가격 등에 관한 미공개정보를 취득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임직원의 사적 이용과 투기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엄격한 내부통제와 감독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공사 임직원의 미공개정보 이용행위를 직접 금지·처벌하거나 임직원의 부동산 거래를 정기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위법·부당한 거래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적발하는 데 한계기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사 임직원과 이들로부터 미공개정보를 취득한 자의 정보 이용행위를 금지하고, 금융위원회가 공사 임직원의 부동산 거래 등을 정

기적으로 조사하도록 하는 한편, 공사에 준법감시관을 두고 부패방지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자 함. 아울러,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은 자에 대한 형사처벌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사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하고자 함(안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5까지 신설).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제3절에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2(미공개정보 이용행위의 금지) ① 공사의 임직원(임직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공사의 업무와 관련된 정보(이하 “미공개정보”라 한다)를 부동산이나 유가증권 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공사의 임직원으로부터 미공개정보를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정보를 부동산이나 유가증권 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공사는 제1항을 위반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정관 또는 내부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처분을 행하여야 한다.

제25조의3(임직원 부동산 거래에 대한 정기조사) ① 금융위원회는 공사의 임직원의 부동산 거래에 대한 정기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부동산 거래 등의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정기조사 결과 제25조의2제1항에 따

른 미공개정보 이용행위가 의심되는 등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사의 임직원에 대하여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과 감사원 등 감사기관에 수사 또는 감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정기조사 결과를 「공직자윤리법」 제9조제2항제8호에 따른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5조의4(준법감시관) ① 공사는 소속 임직원이 공공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개발정보를 이용하여 위법·부당한 거래행위 및 투기행위를 하였는지 여부를 감시하기 위하여 준법감시관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준법감시관은 감사 관련 업무에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사장이 임명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준법감시관으로 임명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4. 탄핵결정에 의하여 파면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③ 제1항에 따른 준법감시관은 공사의 임직원이 공공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위법·부당한 거래행위 및 투기행위를 하였는지 여부를 매년 조사하고, 그 조사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준법감시관의 임명, 자격, 업무범위, 자료요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의5(부패방지교육) 공사는 소속 임직원의 제25조의2제1항에 따

른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제25조의4제1항에 따른 위법·부당한 거래 행위 및 투기행위 등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부패방지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49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미공개정보를 부동산이나 유가증권 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한 자 또는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공사의 임직원으로부터 미공개정보를 취득하여 부동산이나 유가증권 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벌금의 상한액을 10억원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25조의2(미공개정보 이용행위</u> <u>의 금지) ① 공사의 임직원(임</u> <u>직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u> <u>날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아니</u> <u>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u> <u>에서 같다)은 일반인에게 공개</u> <u>되지 아니한 공사의 업무와 관</u> <u>련된 정보(이하 “미공개정보”라</u> <u>한다)를 부동산이나 유가증권</u> <u>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u> <u>용하여서는 아니 된다.</u> <u>② 공사의 임직원으로부터 미</u> <u>공개정보를 취득한 자는 그 취</u> <u>득한 정보를 부동산이나 유가</u> <u>증권 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u> <u>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u> <u>③ 공사는 제1항을 위반한 임</u> <u>직원에 대하여는 정관 또는 내</u> <u>부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u> <u>징계처분을 행하여야 한다.</u>
<u><신 설></u>	<u>제25조의3(임직원 부동산 거래에</u> <u>대한 정기조사) ① 금융위원회</u> <u>는 공사의 임직원의 부동산 거</u>

<신 설>

래에 대한 정기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부동산 거래 등의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정기조사 결과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미공개정보 이용행위가 의심되는 등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사의 임직원에게 대하여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과 감사원 등 감사기관에 수사 또는 감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정기조사 결과를 「공직자윤리법」 제9조제2항제8호에 따른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5조의4(준법감시관) ① 공사는 소속 임직원이 공공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개발정보를 이용하여 위법·부당한 거래행위 및 투기행위를 하였는지 여부를 감시하기 위하여 준법감시관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준법감시관은

감사 관련 업무에 5년 이상의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사장이
임명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은 준법감시관으로 임명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4. 탄핵결정에 의하여 파면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
람

③ 제1항에 따른 준법감시관은
공사의 임직원이 공공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위법·부당한
거래행위 및 투기행위를 하였
는지 여부를 매년 조사하고, 그
조사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준법감시관의
임명, 자격, 업무범위, 자료요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의5(부패방지교육) 공사는

<신 설>

제49조(벌칙) ① . ② (생략) <u><신설></u>	<u>소속 임직원의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제25조의4제1항에 따른 위법·부당한 거래행위 및 투기행위 등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부패방지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u> 제49조(벌칙) ① . ② (현행과 같음) <u>③ 제2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미공개정보를 부동산이나 유가증권 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한 자 또는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공사의 임직원으로부터 미공개정보를 취득하여 부동산이나 유가증권 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또</u>
---	---

	<u>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u> <u>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5배에</u> <u>해당하는 금액이 10억원 이하</u> <u>인 경우에는 벌금의 상한액을</u> <u>10억원으로 한다.</u>
--	---